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14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2. 15

다. 상 정 일 자 : 1998. 12. 22(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 분뇨 관련 수거대행업체의 계속적인 수거물량 감소와 4년동안 유류비, 차량수리비, 각종 공공요금등의 인상으로 수거비용 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 10ℓ 당초 200원⇒320원(60%)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95년1월 10%인상후 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감안하여 동결조치하였으나 '97년말부터 IMF경제한파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4 ~5% 상승되어 인건비,차량유지비,시설관리비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분뇨수거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상승되지 않을경우 업체의 부도로 분뇨수거미이행동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될 소지도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이상은 의원)

○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대폭인상시 영세주민의 부담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10ℓ 당, 당초 200원에서 290원(45%)으로 소폭인상안 발의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재석:7명, 찬성:7명)

붙 임 :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구 분	부과 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구 분	부과 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구 분	부과 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분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200원	·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 처리비가	10ℓ	320원	·	10ℓ	290원	·
			포함된 금액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